

글로벌 해양강국!



**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목 차



■ 해양 분야

1.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이 신설됩니다. 3
2. ‘先계획 後이용 체제’ 의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시행합니다. 4
3. ‘보호대상해양생물’ 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5
4.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확대하고, 입수 제한을 완화합니다. 6
5.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합니다. 7
6.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확대됩니다. 8
7.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여 해양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9
8. 현대화펀드를 조성하여 노후화된 원양어선 대체를 지원합니다. 10

■ 수산 분야

1. ‘굴비, 생굴’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13
2. 제1회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합니다. 14
3.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15
4. 산재형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16

5.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과 무사고 양식장에 보험료를 할인합니다.	17
6. 감척 대상을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합니다.	18
7.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600만원 지급합니다.	19
8.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20
9.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합니다.	21

■ 해운·해사·항만 분야

1. 섬마을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25
2.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합니다.	26
3. 여객선에 승선관리시스템을 도입합니다.	27
4. 기초항법 위반자 과태료를 인상합니다.	28
5. 도선사의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29
6. 선박에 친환경 설비 개량시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30
7. 노후 예선을 LNG선으로 전환 시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31

■ 총괄표



해양 분야

2021년까지 우리나라 쏘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공간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공모를 통해 ‘보호대상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바뀝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합니다.



1.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이 신설됩니다.

해양개발과(☎ 044-200-5248)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합니다.

-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가공하여 식품용수, 농·어업, 화장품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 해양심층수가 가진 미네랄 등 영양성분과 청정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양심층수처리수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해양심층수의 취수 시설을 갖춘 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아야 해서 신규기업 진입이 제한적이었습니다.
 - 이에 2019년 3월부터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독립된 분야로 신설하여 취수시설이 없이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등만 충족하면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도 함께 신설하여 해양심층수의 관련 산업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시장 창출
- 주요내용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①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 신설
 - ②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시설기준 마련
 - ③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규정
 - ④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등록에 관한 규정
- 시행일 : 2019년 3월 22일

2.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시행합니다.

해양생태과(☎ 044-200-5311~2)

2021년까지 우리나라 쏘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공간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설정을 포함한 우리나라 쏘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합니다.

*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군사, 항만·항행, 안전관리

** ('18) 부산·경남 → ('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 → ('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1) 강원도·경북·동해안 EEZ 등 권역별·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 지금까지는 해양공간에 대한 별도의 계획 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하여 따라 이용수요 간 상충이 발생하고,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 2019년 4월 18일부터는 '先계획 後이용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양이용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은 해양이용·개발계획과 해양공간계획의 부합 여부를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해양공간에 대한 선점식 이용에서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先계획 後이용' 체제로 해양공간 관리 패러다임 전환
- 주요내용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① 우리나라 쏘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
 - ②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은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 시행일 : 2019년 4월 18일

3.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과(☎ 044-200-5315)

국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을 '해양보호생물'로 바꿉니다.

- '해양보호생물'이란?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종으로 현재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총 77종의 해양생물이 지정되어 있으며,
 - 불법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할 경우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현재 명칭인 '보호대상해양생물'은 다른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에 비해 단어 길이가 길고 국민들이 쉽게 기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해양보호생물'이라는 명칭이 당선되었습니다.
- 참고로, 2019년 6월부터 '해양보호생물'에 해송류 4종(긴가지해송·망해송·빛자루해송·실해송)이 신규로 지정되고,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가 지정 해제되어 '해양보호생물'은 총 80종이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알기 쉬운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주요내용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명칭변경 : 보호대상해양생물 → 해양보호생물
- 시행일 : 2019년 6월 21일

4.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확대하고, 입수 제한을 완화합니다.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해수욕장의 시설사업 시행자격이 민간까지 확대되고, 해수욕장 입수가 사계절 내내 가능해집니다.

- 현재 공공기관, 공기업만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중·소형 해수욕장은 샤워실, 탈의실 등 이용환경 개선이 어려웠습니다.
 - 이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 사업자나 인근 마을공동체도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해수욕장은 개장기간에만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입수가 가능하며, 서핑, 바다수영 등 해양레저활동의 제약이 많았습니다.
 - 사계절 내내 원칙적으로 해수욕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인파가 몰리는 개장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입수가능 시간과 장소를 제한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과 해수욕장 이용제한 규제완화로 사계절 해수욕장 이용확대
- 주요내용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①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시행령상 일정조건을 갖춘 민간
 - ② 해수욕장 입수제한 완화 : 개장기간 지정 시간 및 장소만 입수가능
→ 폐장기간 자유로운 입수 허용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5.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합니다.

연안계획과 ☎ 044-200-526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합니다.

- 최근 정부는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된 9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근로자·실직자 고용안정,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업위기지역 :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

- 해양수산부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시에('19년 상반기) 결정할 예정이며, 각 행정구역마다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감면할 예정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 주요내용 :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해당 행정구역의 산업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 감면)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6.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확대됩니다.

해양생태과 ☎ 044-200-5315)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바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한 재원을 해양생태계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규모 골재채취(50만㎡ 이상)에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고 있어,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또한,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육상부 사업에는 환경부가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적용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확대합니다.
 - 이를 통해 해양에서의 난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해양 난개발 방지 및 해양생태계 개선
- 주요내용 :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조선업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해당 행정구역의 산업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 감면)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7.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여 해양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044-200-5235)

해양산업 전문 지원펀드를 조성하여 해양산업 투자를 활성화 하고,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 2019년도부터 해양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모태펀드에 해양계정이 신설(정부 200억원 출자 예정)됩니다.

- 해양모태펀드의 투자대상은 주요 해양 신산업 분야와 전통적인 해양 산업 업체 중 첨단 기술 융합을 시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입니다.

< 해양모태펀드 투자 대상 >

신산업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해양수산 신산업 로드맵」 등에서 지정한 중점 육성 대상 신산업 분야의 "도약"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지원분야)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자원개발, 해양 치유 등 레저, 친환경 선박·기자재, 첨단해양장비, 스마트 해운·항만 등
전통산업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해운·조선·항만 등 전통산업에 4차 산업 등 신기술을 융합·적용한 전통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지원분야) AI, IT, IoT,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 첨단기술 융합 분야

- 해양모태펀드는 한국모태펀드의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내년도 상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 산업계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해양모태펀드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추진배경 : 해양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양모태펀드 신규 조성 필요
- 주요내용 : 한국모태펀드 내 해양계정 신설(정부 200억원 출자)
- 시행일 : 2019년 상반기

8. 현대화펀드를 조성하여 노후화된 원양어선 대체를 지원합니다.

원양산업과(☎ 044-200-5367)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양어선 현대화펀드를 조성하여 노후화된 원양어선의 대체를 지원합니다.

- 지금까지는 노후화된 원양어선을 신조하여 대체하기 위해 **용자방식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 ①신조 대체는 용자 70%, 선사 자부담 30%, ②중고 대체는 용자 80%, 선사 자부담 20%

- **중소 원양선사는**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과 **담보·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용자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이에, 정부는 민간과 함께 펀드를 조성하여 **담보·자부담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중소선사도 노후된 원양어선을 새 어선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금 마련이 용이**해집니다.

* 정부출자 50%, 금융기관 대출 30~40%, 선사부담 10~20%

- **원양어선 현대화펀드는 '23년까지 1700억** 조성하여 선령 41년 이상 원양어선 **17척** 대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는 850억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기존 용자지원은 중소 원양선사의 담보·자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참여 저조,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담보·자부담 비율을 낮춤으로써 중소선사의 참여 독려

· **주요내용** :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조성

(기존) 용자지원(신조 대체 70%, 중고선 대체 80%)

(변경) 펀드 조성(정부출자 50%, 금융기관 대출 30~40%, 자부담 10~20%)

· **시행일** : 2019년 상반기



수산 분야



수산 분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굴비와 생굴을 대상으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에 대해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 상품을 보급하고, 국고지원도 확대합니다.



2022년까지 300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여 해양관광활성화 및 어촌 재생 등을 전인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1. '굴비, 생굴'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유통정책과(☎ 044-200-5450)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굴비와 생굴을 대상으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수산물이력제란?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여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자율참여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위해 **대상품목으로 '굴비와 생굴'을 선정하고,**

- **2018년 12월부터 국민 인식도를 높여 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력번호 구성	업체(등록)번호(4)	제품유형(2)	년도(2)	일련번호(5)
	× × × ×	× ×	× ×	× × × × ×

☀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보도자료>굴비·생굴 유통 과정 한 눈에...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첫걸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자율적 참여방식으로는 내실 있는 이력제 운영에 한계
- **주요내용** : 굴비와 생굴에 대해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
 -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굴비와 생굴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연차별로 확대
- **시행일** : 2018년 12월 ~ 2021년 12월 (3년간)

2. 제1회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합니다.

유통정책과(☎ 044-200-5443)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을 확보와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해 2019년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합니다.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19년에 실시합니다.
-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는 각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7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4과목) : ①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등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②유통 상식 ③경매 실무 ④상품성 평가
 - 실기시험 : 모의 경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개요 >

- 법적근거 : 수산물유통법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28조
- 시행시기 : 매 2년마다 실시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해양수산연수원 위탁

3.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소득복지과(☎ 044-200-5466)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합의사항('11.10)에 따른 어촌의 피해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인상됩니다.**

- '19년에는 5만원이 인상되어 어가 당 65만원이 지원됩니다.

* 연륙되어있지 않은 모든 도서지역

**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어촌분야 피해보전 대책으로 도입('12년)되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 참고로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는 **시범사업('12~'13년)을 거쳐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로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 ('12~'16년) 어가당 50만원/년 → ('17) 55 → ('18) 60 → ('19) 65 → ('20) 70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
- **주요내용** :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및 지급액 고시
 - 지급 단가 인상 : ('18) 어가 당 60만원 → ('19) 65만원
- **시행일** : 2019년 3월(예정)

4. 산재형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소득복지과(☎ 044-200-5471)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에 대해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 상품을 보급하고, 국고지원도 확대합니다.

-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에게도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을 보급합니다.
 - * 연근해어선 승선원 중 어선원보험 미가입자, 해녀·해남, 양식장 근무자, 갯벌채취 작업종사자, 어업관련 단순노무자 등
- 산재수준으로 강화된 상품을 출시하여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국고보조율을 확대(50% → 70%) 하여 영세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 추진배경 : 어업인 정책보험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 ① 산재형 출시 : 유족급여금(1억원 → 1억2천만원), 장해급여금(1억원 → 1억2천만원) 등
- ② 어업인안전보험 국고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보조율 50% → 70%)

· 시행일 : 2019년 1월

5.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과 무사고 양식장에 보험료를 할인합니다

소득복지과(☎ 044-200-5471)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과 전년도 무사고 양식장에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해줍니다.

- **어업인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에 대하여 사고 위험률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제도를 도입합니다.**
 - 현재 안전설비를 설치한 어선 중에는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어선과 **설치의무가 없으나** 안전관리를 위해 **자비를 부담하여 설치하는 어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 비의무설치 어선 중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과 해당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2019년 1월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최대 5%)**을 받게 됩니다.
- *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 구명뗏목, 레이더
- 양식어업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9년 상반기부터 전년도 무사고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최대 5%)**을 제공합니다.

· **추진배경** :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사고 위험률 감소

· **주요내용** :

- 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 대상은 10톤 미만으로 안전설비 비 의무설치 어선
 - 할인적용 안전설비(각 상품별 최대합산 5% 할인)
 - 어선원 : 선박자동식별장치(1%),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1%), 레이더(1%), 구명뗏목(2%)
 - 어선 : 선박자동식별장치(2%),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1%), 레이더(2%)
- ② 양식어업재해보험 : 전년도 무사고 할인 제도 도입(보험료의 5% 이내)

· **시행일** : ① 2019년 1월 / ② 2019년 4월(예정)

6. 감척 대상을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합니다.

어업정책과(☎ 044-200-5516)

어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감척을 어구(정치성구획어업 9종)까지 확대합니다.

-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 세력을 줄이기 위해 실시해오던 어선 감척을 **어구까지 확대**해 나갑니다.
 - (현행) 32개 어선 어업 → (개선) 32개 어선 어업 + **9개 어구 어업***
 - *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어업
- 이에 앞으로는 수산자원 감소와 고령화로 **어업활동이 어려워** 감척을 희망하는 **정치성 구획어업*인도 감척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척시 지원 : **폐업지원금(평년 수익액의 3년분) + 어선·어구 잔존가액**
 - * 전국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건수는 총 3,267건, 어업인은 6,588명이며, 동 업종 종사 어업인은 연안어업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고, 영세.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 **주요내용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 감척대상에 어구어업(정치성구획어업 9종*)을 포함
 - *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어업
- **시행일 :** 2019년 1월

7.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600만원 지급합니다.

지도교섭과(☎ 044-200-5563)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1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포상금액을 일괄 상향* 조정하는 한편,
* (현재) 10 ~ 200만원 → (조정) 50 ~ 600만원
-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포상금액 대비 약 2배 가량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기존의 불법어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뿐만 아니라, 불법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사법처분	징역형	1년 이상	(현행) 200만원 → (개정) 300만원
		1년 미만	(현행) 100만원 → (개정) 200만원
		벌금형	(현행) 벌금액의 100분의 10 → (개정) 100분의 50
행정처분			(현행) 10만원 → (개정) 취소 200만원, 정지 100만원, 경고 50만원
* 수산자원 남획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아래의 신고사항은 포상확정금액에 2배를 지급 - 무면허, 무허가 어업, 면허 및 허가어업 외의 어업, 대게.꽃게(포란 암컷 및 체장미달)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어선의 사용제한(공조 조업), 폭발물·유독물·전류사용 포획·채취, 조업금지구역 위반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확대
- 주요내용 :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 ①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액을 일괄 상향 : (현행) 10~200만원 → (조정) 50~600만원
 - ② 중대위반사항 신고시 일반적 포상금액 대비 약 2배 가량 확대 지급(최고 600만원)
- 시행일 : 2019년 1월

8.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어촌어항과 ☎ 044-200-5663)

**청년어촌정착자금의 지원 대상 인원(100 → 200명)과
범위(귀어인에 한정 → 후계어업경영인 추가)를 확대합니다.**

- 기존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를 **귀어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어촌지역에 거주하던 청년들은 어업을 창업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만 40세 미만의 면허·허가 어업 경영 3년 이하 청년 어업창업자 중 어업의지가 높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영어정착 지원금을 매월 1백만원, 최장 3년까지 지원('18년 시작)

- 이에, '19년부터는 귀어인 뿐만 아니라 **후계어업경영인도** 영어정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지원인원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합니다.

- 또한, 일부 지역에 한하여 3년간 지원하던 것을 지역과 관계없이 3년간 지원합니다.

* ('18년) 1년차 10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조건불리지역 한정) 100만원**
(‘19년)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참고로 지원 받은 영어정착자금은 창업 초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정착자금과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상품 개발비, 마케팅 비용, 보험가입** 등의 어업자금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청년일자리 부족과 어촌의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로의 이탈 등 해결

· **주요내용** :

- ① 지원 인원 확대 : 100 → 200명
- ②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귀어인 → 후계어업경영인
- ③ 지원 기간 : 조건불리지역에 한정하여 3년 → 지역에 관계없이 3년

· **시행일** : 2019년 1월

9.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합니다.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044-200-6174)

2022년까지 300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여 해양관광활성화 및 어촌 재생 등을 견인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촌뉴딜300이란? 어촌의 재생·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22년까지 300개의 어촌·어항에 낙후된 선착장 등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통합 개발을 추진합니다.
- '19년에는 기선정된 사업대상지 70개소에 대한 사업설계를 추진하고,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마련 등의 사업을 먼저 집행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보도자료>어촌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어촌의 산업구조를 해양관광·레저 등으로 다변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 주요내용 : '22년까지 300개소의 어촌·어항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통합 특화개발 추진
- 시행일 : 2019 ~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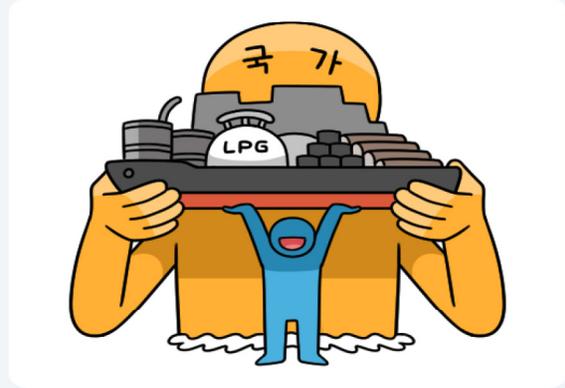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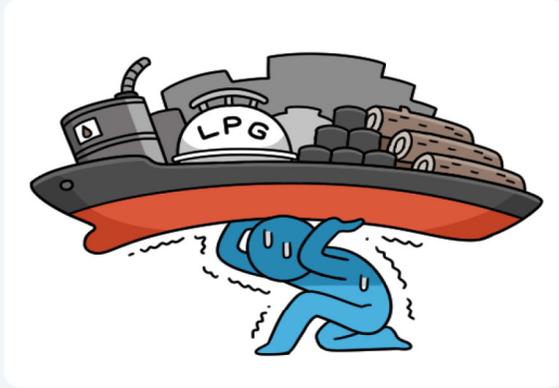


해운·해사·항만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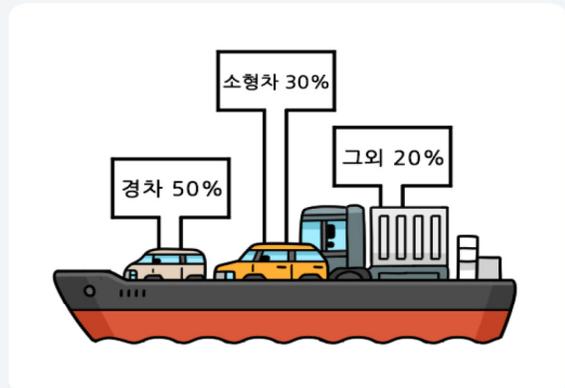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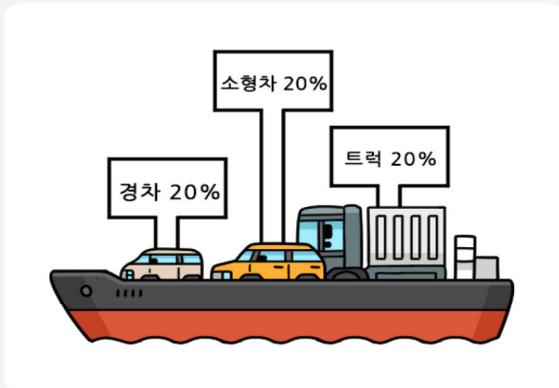


해운·해사·항만분야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4가지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선 승선인원을 수기 관리에서 전자화한 승선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1. 섬마을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연안해운과(☎ 044-200-5735)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4가지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민이 사용할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운법」이 개정·공포('18.12)되어 '19년 6월 부터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 하였으나,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국가에서 2019년부터 도서지역이 있는 8개 지방자치단체에 생필품인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지원(국비 50%)합니다.
- * 참고로 지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하여 운송 협약을 체결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등 운송사업자임
- 또한, '19년 예산에 반영된 국비 10억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빠짐없이 배정하여 적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해운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 주요내용 : 해운법 개정·시행
 - (기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상이 지원
 - (개선)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50:50 분담 지원
- 시행일 : 2019년 6월 12일

2.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합니다.

연안해운과(☎ 044-200-5733)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 지금까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천~7천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 그런데, 여객선 차량운임을 경감해달라는 도서민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도서민의 차량 운임을 추가 지원하도록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 참고로 도서민 차량운임의 지원 대상은 해당 도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의 명의로 등록되고,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입니다.

-
- 추진배경 :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 주요내용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 개정 및 국비 소요예산 반영
 - (기존) 일률 20% 차량운임 지원
 - (개선)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 그 외 20%(2500cc 미만 승용차)
 - 시행일 : 2019년 1월

3. 여객선에 승선관리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연안해운과(☎ 044-200-5733)

여객선 승선인원을 수기 관리에서 전자화한 승선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여객선의 승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 여객선에 휴대형·고정형 승선 스캐너를 국가에서 제공(민간 30% 부담)하여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합니다.
- 지금까지 승객이 여객선에 승선할 시에 수기로 승선인원을 집계·관리하던 것을 고속버스 티켓 확인 체계와 유사한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승선인원을 집계**가 가능해집니다.
- 앞으로, 여객선 운항 중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승선인원** 및 승객의 **인적사항** 등을 **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수색·구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 정확하고 신속한 승선인원 관리를 위한 승선관리시스템 도입

· **주요내용** : 국비 소요예산(10억 5천만원) 반영

- ① 전 연안여객선에 휴대형·고정형 스캐너를 보급하여 실시간 승선인원 관리
- ② 기존 여객선 승선할 시에 수기로 승선권을 확인하던 것을 전자적 방법으로 승선권 확인

· **시행일** : 2019년 7월(전 여객선에 설치 예정)

4. 기초항법 위반자 과태료를 인상합니다.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선박 운항자의 항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을 개정하여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높였습니다.
- 적용 시기는 2019년 7월부터이며, 적용 대상 항법은 경계(제63조), 속력(제64조), 충돌위험 판단법(제65조), 충돌회피 동작(제66조), 추월방법(제71조),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제72조),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제73조),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제77조)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해사안전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급유선-낙시어선 간 충돌사고('17.12월)를 계기로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기초항법 준수에 대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 주요내용 : 해사안전법 개정·시행
 - 경계, 안전한 속력 및 충돌회피 동작 등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300 → 1,000만 원)
- 시행일 : 2019년 7월(법률 공포 후 6개월)

5. 도선사의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항만운영과(☎ 044-200-5772)

도선사 시험 응시 요건이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 5년 이상에서 경력 3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젊고 우수한 도선사***를 선발하기 위해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선장경력 요건을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낮추었습니다.**

*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사람

**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는 사람으로, 실무수습과정을 모두 마친 후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도선사 면허 취득

- 또한, **최근 선장경력을 우대**하기 위하여 시험일 전 5년 이내 1년 이상 현장 승무경력이 시험 응시요건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다만 기존 시험 준비생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시험 응시요건으로 적용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도선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젊고 우수한 도선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시험 응시요건 완화
- **주요내용** : 도선법 개정
 - (기존) 도선수습생 선발시험 응시요건이 기존 6천톤 이상 5년 이상 선장경력
 - (개선) 6천톤 이상 3년 이상 선장경력
- **시행일** : 2019년 도선수습생 선발시험부터 적용(6월 셋째 주 시험 실시 예정)

6. 선박에 친환경 설비 개량시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해운정책과 ☎ 044-200-5720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자 대출 받는 경우 이자의 일부(2%p)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선박평형수 관련 국제협약 발효('17.9.8) 후 첫 선박 정기검사(5년 주기)일까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를 설치하여야 하며,
 - 국제해사기구(IMO)가 '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를 현행 3.5%이하에서 **0.5%이하로 강화**하여, **탈황장치(Scrubber)**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의 일부(2%p)**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정부의 이차보전 시행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탈황장치 등 친환경 설비 설치에 따른 **해운선사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새소식>공지사항>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대응을 통한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 친환경 설비(평형수처리설비, 탈황장치 등) 설치를 위한 자금 대출시 이자의 일부(2%p)를 국가가 지원
- **시행일** : 2019년 1월

7. 노후 예선을 LNG선으로 전환 시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항만운영과 ☎ 044-200-5772)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예선을 LNG선으로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선가 20%, 최대 14억)합니다.

- 선령 20년 이상 항만 예선(선박입출항법 상 예선사업자)을 LNG 연료추진 예선으로 전환하는 경우, 선가의 20%(최대 척 당 14억 원)을 지원합니다.
- LNG 연료는 기존 디젤 예선 연료인 MDO(황 1% 함유) 대비 황산화물(NOx) 92%, 질소산화물(SOx) 100%, 이산화탄소(CO2) 23%, PM 99% 저감 효과*를 가집니다.

* Rolls-Royces社 가스전소엔진 기준(KOMERI, 18.4월)

- 아울러, 예선은 선박 규모 대비 출력(마력)이 높은 대용량 엔진을 사용 하기에, LNG 연료추진 예선 전환 시 환경오염 저감 효과가 높습니다.

-
- 추진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고효율 선박에 대한 요구 증대 및 국내 주요 항구도시의 대기오염 문제 대두, 자발적 친환경 선박 전환 유도 필요
 - 주요내용 : 선령 20년 이상 항만 예선의 보유 사업자는 LNG 연료추진 예선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모 방식을 통해 신조 보조금을 지원 받아 대체건조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세부 내용 및 공모 일정은 향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총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해양 분야 >			
1.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신설	○신 설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 ○제조업 시설기준, 처리수 수질기준, 수입업 등록 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3.22)
2.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 시행	○신 설 -개별법에 따른 선점식 해양 이용 ○신 설	○우리나라 쉼해역에 대해 해양공간 계획을 수립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은 해양이용· 개발계획 수립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해수부와 사전 협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4.18)
3.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변경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양보호생물’로 명칭 변경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6.21)
4.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및 입수기간 확대	○공공기관과 공기업만 시설사업 시행 가능 ○폐장기간 입수 금지	○민간사업자, 인근 마을공동체로 시행자격 확대 ○폐장기간 입수 허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7.1)
5.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신 설	○9개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9.7.1)
6.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중 50만m ³ 이상 골재채취만 부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7.1)
7. 해양모태펀드 조성	○신 규	○해양산업 전문 지원펀드 조성	-
8. 원양어선 현대화펀드 신설	○신 규	○현대화펀드 조성으로 선사 자부담 10~20%로 하향	‘19.상반기
< 수산 분야 >			
1.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08년부터 자율참여 (약 40여개 품목)	○‘굴비, 생굴’ 이력제 의무적 이력등록관리 시범사업 추진(3년)	(‘18.12 ~ ‘21.12)
2.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신 설	○제1차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실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1.1)
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상향	○60만원/어가당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 -(‘17) 55 → (‘18) 60 → (‘19) 65 → (‘20) 연 70만원/어가	한·중 FTA관련 여·야정 합의 (‘17.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4. 산재형 어업인 안전보험 출시	○신 설 ○국고보조율 50%	○산재형 신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50 → 70%)	어업인안전보험 시행지침 ('19.1월)
5. 보험 할인제도 도입	○신 설 ○신 설	○안전설비 설치어선 각 상품별 최대 합산 5% 할인 ○전년도 무사고자, 보험료 5% 할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19.1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19.4월)
6. 감척 대상 확대	○32개 어선어업	○32개 어선어업 + 9개 어구 어업 *9개 어구 :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어업	연근해 어업구조 개선법 시행령 ('19.1월)
7.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인상	○징역형 100~200만원 ○벌금형 20~100만원 ○행정처분 10만원 ○신 설	○200~300만원 포상 ○100~200만원 포상 ○경고 50, 정지 100, 취소 200만원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 위반 : 포상확정금액 2배 지급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19.1월)
8. 청년 어촌 정착 지원금 확대	○지원인원: 100명 ○지원대상: 귀어인 ○지원기간: 조건불리지역 한해 3년	○200명 ○후계어업경영인 포함 ○지역에 관계없이 3년	('19.1월)
9. 어촌뉴딜 300	○신 규	○전국 300개 어촌·어항 현대화 및 통합개발	('19~'22년)
< 해운·해사·항만 분야 >			
1.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상이 지원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원	해운법 ('19.6.12)
2.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확대	○2500cc미만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일률 20% 지원	○1000cc 미만 경형승용차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 30%, 그 외 20% 차등 지원	- ('19.1월)
3. 여객선 승선발권 시스템	○신 규	○전 연안여객선에 승선관리시스템 도입	- ('19.7월)
4. 기초항법 위반자 과태료 인상	○300만원	○1,000만원	해사안전법 ('19.7월)
5. 도선사 자격요건 완화	○도선수습생 선발시험 응시요건 6천톤 이상 5년 이상 선장경력	○6천톤 이상 3년 이상 선장경력	도선법 ('19.1월)
6. 외항화물선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신 설	○외항화물선 친환경 설비 개량을 위한 자금 대출시 이자의 2%p 지원	- ('19.1월)
7. 노후 예선의 LNG 전환 지원	○신 설	○선령 20년 이상 노후 예선을 LNG 추진 예선을 전환하는 경우 최대 14억원(척당) 보조금 지원	- ('19.1월)